CONTENTS

제 1 장. 토론회 일정 안내 ····· 1

1. 숙의형 시민토론회 ····· 2
2. 청소년·청년토론회 ····· 3

제 2 장. 개헌의 의미 ····· 5

제 3 장. 기본권 개헌의제 ····· 11

1. 기본권 개헌의제 목록 ····· 12
2. 기본권 설명 ····· 13
3. 기본권 개헌의제 관심도 조사 ····· 15

제 4 장. 지방분권 ····· 17

1. 보충성의 원칙 ····· 18

제 5 장. 직접민주주의 ····· 21

1. 국민발안과 처리 방법 ····· 22
2. 국민소환제 도입 ····· 27

제 6 장.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조정 ····· 31

1. 국무총리의 선임방법 ····· 32

부록1. 헌법 조문 ····· 39

부록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53

CHAPTER

01

토론회 일정 안내

1. 숙의형 시민토론회

권역	일시	장소	규모
충청	3.1(목) 11:00~18:30	대전 레전드 호텔	200명
호남·제주	3.1(목) 11:00~18:30	광주 신양파크호텔	200명
영남	3.3(토) 11:00~18:30	부산 부산항컨벤션센터	200명
수도권·강원	3.4(일) 11:00~18:30	서울 시청한화센터	200명

시 간		내 용
~11:00		등록
11:00~11:25	25’	1차 설문조사/기본권 분야 개헌의제 관심도 조사
11:25~11:30	05’	개회식
11:30~12:00	30’	개헌의미 설명
12:00~13:00	60’	점심식사
13:00~13:50	50’	기본권 분야 개헌의제 관심도 토의 및 재조사
13:50~14:10	20’	휴식
14:10~15:50	100’	〈토의 진행〉 의제①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 - 보충성의 원칙 - 국민발안과 국회와의 관계 - 국민소환
15:50~16:10	20’	휴식
16:10~18:10	120’	〈토의 진행〉 의제②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조정 - 국무총리 선임 방법
18:10~18:25	15’	2차 설문조사
18:25~18:30	5’	폐회 및 귀가

2. 청소년·청년토론회

시 간		내 용
~13:30		등록
13:30~13:50	20’	1차 설문조사/기본권 분야 개헌의제 관심도 1차조사
13:50~13:55	05’	개회식
13:55~14:35	40’	기본권 분야 개헌의제 관심도 토의 - 토의 후 관심도 조사 실시
14:35~14:50	15’	휴식
14:50~16:10	80’	토의 진행 의제①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 - 보충성의 원칙 - 국민발안과 국회와의 관계 - 국민소환
16:10~16:25	15’	휴식
16:25~18:05	100’	토의 진행 의제②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조정 - 총리 선임 방법
18:05~18:25	20’	2차 설문조사
18:25~18:30	05’	폐회 및 귀가

CHAPTER

02

개헌의 의미

왜 개헌인가?

-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의 배분 · 통제를 다룸**
-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31년이라는 긴 시간이 경과**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헌요구**
  -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질화하는 민주주의의 심화
  - 주권자인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권의 보장
  - 정보사회와 지속가능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할 필요

국민개헌의 의미

- **세계는 국민참여를 통해 개헌중(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
- **정치권만의 논의 그쳤던 9차례의 개헌과정**
  -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최초의 국민개헌
- **개헌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 이행**
  -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에서 개헌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음
  - 2017년 1월 이후 국회 논의 본격화
  -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여야후보들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

개헌발의의 의미와 발의후의 절차

01 헌법상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와 대통령이 할 수 있음

02 이번에 발의하면 1987년 이후 최초로 완성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임

03 발의후에 20일간 공고, 60일 내에 국회 표결, 표결후 30일이내 국민투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대한 소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설치 – 총33명(위원장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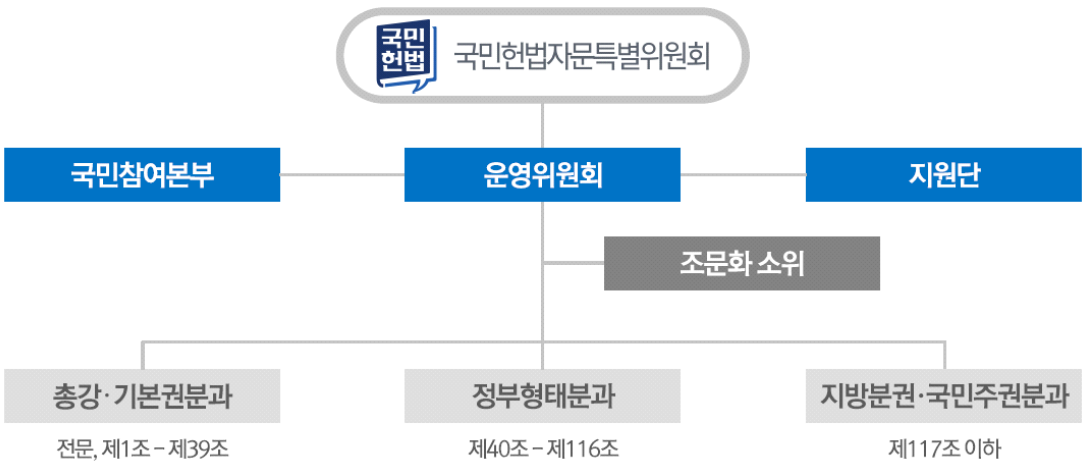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대한 소개

주요 일정 – 3월 13일(화) 자문안 보고를 목표로 추진

2.13(화)	특위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
2.13(화)~3.6(화)	분과위·국민참여본부 운영
2.19(월)	홈페이지 오픈
2.19(월)~3월초순	각종 단체·기관, 국민 토론회
2월말~3월초	여론조사
3.2(금)	제2차 전체회의(분과위 결과 보고)
3.7(수)	제3차 전체회의(개정요강 및 국민참여 결과 보고)
3.12(월)	제4차 전체회의(개정요강 및 시안 확정)
3.13(화)	개헌자문안 보고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01 온라인 웹페이지 구축(2.19 개통)

www.constitution.go.kr

- 개헌에 관한 정보제공, 주요쟁점 등에 대한 토론(22개 주목받는 안건 및 내가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 등), 각계각층의 제안을 접수

02 숙의형 시민토론회, 청소년청년토론회 개최

- 국민이 적극 토론에 참여해 개헌에 대해 충분히 숙의하는 숙의형 시민토론회와 청소년청년토론회를 개최

숙의형 시민토론회	3.1(목)	대전/레전드호텔	200명
	3.1(목)	광주/신양파크호텔	200명
	3.3(토)	부산/부산항컨벤션센터	200명
	3.4(일)	서울/시청한화센터	200명
청소년청년토론회	3.3(토)	서울/시청한화센터	160명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03 여론조사 실시

- 국민의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심층면접 여론조사 실시
  (2,000명 대상/2.23~3.5)

04 유관단체 간담회 개최

- 자체 개헌안을 준비해온 기관으로부터 의견 청취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2월 19일	2월 20일	2월 22일

- 5개 주요 학회와 간담회 실시 예정

한국정치학회/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사회학회
2월 23일	3월 2일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05 지역시민사회 간담회 개최

- 16개 시도의 지역현장을 찾아가 지역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

2.25(일)	충북(13:30)/충남(16:00)
2.26(월)	강원(10:30)/세종(11:00)
2.27(화)	제주(10:00)
2.28(수)	경기(11:00)/대구(14:00)/인천(14:00)/전북(14:00)/경북(19:00)
3.1(목)	대전(13:00)/광주(13:30)
3.3(토)	부산(14:00)
3.5(월)	울산(15:00)/경남(19:00)/전남

개헌 논의의 주요 의제

전문 및 총강

-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 · 18, 6 · 10 등 역사적 사건 명시
- 수도[首都] 규정 명시

국민주권 및 기본권 강화

-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제 도입
- 안전권 · 사회보장권 · 건강권 · 주거권 강화
- 차별금지사유 확대 및 실질적 평등권 강화
- 임신출산양육권의 보장과 국가의 책임 규정
- 환경권 · 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 생명권 · 정보기본권 및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소비자의 권리 신설
-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강화(군인 등 제외)
- 경제민주화 확대, 토지공개념 도입,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인정
-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원칙 명시

지방분권

- 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보충성의 원칙 명시와 지방정부 개칭 여부
-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 확대
-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의 정례회의(가칭 '제2국무회의') 신설

정부 권한 배분 및 선거제도

-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
- 감사원의 직무독립성 강화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
-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제한(사면위원회 심사 근거 헌법 명시)
-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축소
-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국민의 의사에 따른 의석 배분) 강화 원칙 명시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사법제도 개선

- 사법부에 대한 대법원장 독점적 인사권 축소
- 영장 신청 검사독점 조항 삭제, 진술거부권 강화
- 국민참여재판 근거 마련
- 법관으로 한정된 헌법재판관 자격 개방

CHAPTER

03

기본권 개헌의제

1. 기본권 개헌의제 목록

번호	기본권의 신설 및 확대
1	안전권 · 생명권 ·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설
2	실질적 평등권 강화 : 차별금지 사유 확대, 성차별 등 현존하는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
3	사상의 자유 · 표현의 자유 강화, 국민 저항권 명시
4	정보기본권 신설 : 알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보격차 해소 등
5	난민 보호 의무 및 망명권 신설
6	사회보장권 · 건강보건권 강화 : 국가의 노력 의무→권리
7	교육을 받을 권리 강화 · 문화향유권 신설
8	사회적 약자(아동, 노인, 장애를 겪는 사람) 기본권 신설 : 복지의 대상 → 권리 주체
9	노동권 강화 : '근로'→'노동'으로 용어 수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원칙 명시
10	환경권 강화, 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명시
11	토지 공개념 도입 · 주거권 신설
12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인정 및 국가의 지원 의무 명시
13	소비자 권리 신설 : 계도 · 보호→기본권으로
14	사법 절차 청구권 강화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15	국방의무와 기본권의 조화 :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인정, 대체복무제 신설 등

2. 기본권 설명

번호	기본권	설명
1	**안전권**	재해,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생명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이고 근원이 되는 권리로 목숨이 부당하게 위협받지 않을 권리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를 명시하고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 금지
2	**차별금지 사유 확대**	차별금지 사유를 '인종', '언어', '장애', '연령', '고용형태' 등으로 확대하여 평등권 강화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	현존하는 차별과 불이익을 해결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도록 국가에 요구할 권리와 적극적 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 명시
3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명시**	양심의 자유와 구분되는 사상의 자유를 명시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다 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로 강화
	국민 저항권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자 혹은 불의한 권력에 맞서 국민이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
4	**정보기본권**	정보통신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가사찰능력 고도화 등을 고려하여 알 권리,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독점 예방 등을 기본권으로 규정
5	**난민 보호 의무 및 망명권**	재난과 전쟁 등을 피해 탈출한 난민을 국제법 등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고, 정치적 박해를 받는 자의 망명권도 보장
6	**사회보장권**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규정
	건강 및 보건권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
7	**문화향유권**	문화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자유, 나아가 그러한 접근과 이용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권리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적성과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과정의 질 제고 및 평생교육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

번호	기본권	설명
8	**사회적 약자 기본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복지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
9	**'근로'→'노동'으로 용어 수정**	'근로'는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가치를 내포한 국가주의적 성향을 띤 용어이므로 노동존중과 기본권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가치중립적 용어인 '노동'으로 수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남녀임금 차별 등으로 인한 임금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근거 명시
10	**환경권의 강화, 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현행헌법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넘어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해야할 국가의 의무 규정
11	**토지 공개념**	토지의 유한성, 독점과 투기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사유물의 측면과 더불어 공적인 재화의 성격을 지니므로 그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주거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 주거기준의 근거를 마련
12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농업과 어업은 나라의 근간인 먹거리를 생산할 뿐 아니라, 환경 보전, 경관 제공, 식량 안보 등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농어민 권익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
13	**소비자의 권리**	상품의 소비자로서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조직 및 활동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등
14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과 법률, 적법절차에 따라, 피고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공개적인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는 때'에서 모든 '사법절차'로 확대하는 것,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을 '형사피고인'에서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것 등
15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인정**	현행헌법의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삭제 필요
	대체복무제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거부를 강제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 허용

3. 기본권 개헌의제 관심도 조사

※ 아래 **기본권 관련 개헌의제 목록**에서 귀하가 관심이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들을 골라 **관심 정도에 따라 10점을 자유롭게 나누어 배분**해 주세요. (예를 들어 10개 목록을 골라 1점씩 나누어 줄수도 있고, 5개 목록을 골라 원하는 점수를 배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영역에 모든 점수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배분된 전체 점수가 10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번호	기본권의 신설 및 확대	(토의전) 사전조사	(토의후) 사후조사
		배점	베점
1	안전권 · 생명권 ·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설		
2	실질적 평등권 강화 : 차별금지 사유 확대, 성차별 등 현존하는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		
3	사상의 자유 · 표현의 자유 강화, 국민 저항권 명시		
4	정보기본권 신설 : 알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보격차 해소 등		
5	난민 보호 의무 및 망명권 신설		
6	사회보장권 · 건강보건권 강화 : 국가의 노력 의무→권리		
7	교육을 받을 권리 강화 · 문화향유권 신설		
8	사회적 약자(아동, 노인, 장애를 겪는 사람) 기본권 신설 : 복지의 대상 → 권리 주체		
9	노동권 강화 : '근로'→'노동'으로 용어 수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원칙 명시		
10	환경권 강화, 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명시		
11	토지 공개념 도입 · 주거권 신설		
12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인정 및 국가의 지원 의무 명시		
13	소비자 권리 신설 : 계도 · 보호→기본권으로		
14	사법 절차 청구권 강화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15	국방의무와 기본권의 조화 :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인정, 대체복무제 신설 등		
합계		**10점**	**10점**

CHAPTER

04

지방분권

01 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이란?

- 보충성의 원칙이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 보충성의 원리에 의하면 행동의 우선권은 언제나 '소단위'에게 있고, '소단위'의 힘만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항에 한해서 '차상급 단위'가 보충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 군 · 구의 사무이고, 시 · 군 · 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 · 도의 사무이며, 시 ·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가 됩니다.

현행 규정

- 현재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만, 헌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헌 찬반 입장

헌법에 보충성의 원칙을 직접 규정하자는 입장

- 첫째,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된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인 보충성의 원칙을 최고 규범인 헌법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 둘째, 보충성의 원칙이 도입되어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 배분이 분명하게 되어 누가 권한을 행사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지 명확해집니다.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는데 반대하는 입장

- 첫째, 우리 지방자치 역량을 고려할 때에 헌법에서 명문으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 둘째,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보충성의 원칙이 담겨 있으므로 헌법에 규정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보충성의 원칙 헌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참고1〉 지방자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참고2〉 지방분권·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주요 외국 헌법

- 독일 기본법 제23조 제1항 : 국가의 임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 스위스 헌법 제5a조 : 국가임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다라 분배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CHAPTER

05

직접민주주의

01 국민발안과 처리 방법

국민발안제란?

- 국민발안제란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로서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국민들 일정숫자가 서명을 해서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안건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현행 규정

-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주민들 일정 숫자가 서명을 하면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국가차원에서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들만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개헌 찬반 입장

국민발안제 도입 찬성 입장

- 우리나라는 1954년 제2차 개헌에서 국민발안제가 채택되어 1971년까지 국민들 50만 명이 서명을 하면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었습니다만, 1972년 제7차 개헌에서 폐지되었습니다.
- 국회나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제안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민들이 직접 서명을 해서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국민발안제가 도입되면,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미리 감지하여 국민이 원하는 입법을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발안제 도입 반대 입장

- 자칫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념적 · 종교적 사안에 대해 국민발안이 이뤄질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국민발안을 통해 선심성 정책이나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도입될 경우에는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 국민발안을 하려면 많은 사람에게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돈 있고 조직력이 있는 쪽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서명을 받을 수 있지만,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민발안이 돈과 조직력이 있는 쪽에 의해서만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국민발안제 도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국민발안제 도입 시 국회의 역할은?

- 만약 국민발안제가 도입된다면, 국민들은 일정 숫자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국회의 역할을 기준으로 그 안건이 다뤄지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발안 처리방안 1 : 국민은 발안 제안만, 심의·판단은 국회가

- 국민들에게는 안건을 제안할 권리만 인정하고,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국회가 심의 ·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 만약 국회가 국민들이 제안한 안건을 부결시키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이 납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도입된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 안은 국민이 선거 등의 절차로 대표를 선출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상, 국민들이 안건을 제안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에 기초한 의견입니다. 국민발안된 사안들 중에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안들이 모두 국민투표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운영에 혼란과 비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 반영된 국민발안이라면, 국회가 쉽게 부결시키기 어렵고, 결국 합리적 타협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국민발안 처리방안 2 : 국민발안 안건이 국회 심의 결과와 다를 경우 국민투표

- 국민들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회가 심의를 하게 하되, 국회가 부결시킬 경우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 만약 국회가 국민발의 안건을 부결시키거나 수정처리할 경우에는, 국민 서명을 더 많이 모아서 국민이 제안한 안건 그대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 이 안이 제시된 이유는 국민들 수십 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제안된 안건이 단순히 국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제안한 안건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우선 국회가 심의 ·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고, 대의기관의 결정을 번복하려면 국민발안을 시도한 측도 더 많은 국민서명 등으로 다수의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국민발안 처리방안 3 : 국회의 심의 없이 국민투표 실시

- 국민들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 국민발안된 안건은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서명을 해서 제안된 것이므로, 곧바로 국민들 전체의 의견을 물어보는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 국민발안된 안건에 대해 국회가 심의·판단하게 하는 것은 시간만 걸릴 뿐이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국민발안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이 시작되는 경우는 국회가 해당 입법에 소극적으로 임해왔기 때문인 경우이기에, 국회에 가부를 묻지 말고 곧바로 국민투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 문제는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와 묶어서 투표를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발안제가 도입될 경우

국회의 역할은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헌법의 연혁

- 1954년부터 1972년까지 우리 헌법에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 조항이 있었음.
  - 제헌헌법 및 1952년 헌법에서는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을 규정하지 않았고,
  - 1954년 및 1960년 헌법에서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여 민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을 발의권을 인정하였으며, 1962년 및 1969년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1972년 헌법에서 헌법개정 절차에서 국민발안을 제외하여 현행헌법까지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
-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법률안에 대한 국민발안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5조)

주요 외국 헌법

- 스위스는 10만명의 유권자가 헌법의 전부개정 또는 일부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일부개정의 경우 일반 제안형식 또는 완성된 초안형식으로 발의할 수 있음. 국민발안이 일반 제안형식인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헌법 일부개정안을 작성하게 됨.
- 이탈리아에서는 헌법개정안은 헌법개정법률로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나 기관이 발안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개정안은 조항별로 작성하여 최소 5만 명의 유권자가 서명하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음.
- 스페인은 법률에 대한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조직법, 세법, 국제관계 그리고 사면권은 국민발안의 예외로 하고 있음.

02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소환제란?

- 국민소환제란 선거를 통해 뽑힌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시킬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

- 현재 지방자치에는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서, 일정숫자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환투표에서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이 찬성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파면됩니다.
-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서, 국민소환제를 헌법에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개헌 찬반 입장

국민소환제 도입 찬성 입장

- 헌법 제1조 제2항이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이 직접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없습니다.
- 주기적으로 선거를 하지만, 선거로 뽑힌 공직자가 국민의 이익과 상반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패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임기 중이라도 파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만, 베네수엘라, 영국에서 국민소환제가 도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선거로 뽑힌 공직자들이 주권자들의 뜻에 맞게 활동하고, 권한남용이나 부패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국민소환제 도입 반대 입장

-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소환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직접민주제의 기원으로 알려진 스위스의 경우에도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소환제가 정치적인 반대세력에 의해 악용될 경우에는 정치적인 혼란이 초래될 염려가 높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대통령파와 야당파지지 유권자들이 각각 야당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에 대한 소환요구를 했고, 임기 내내 소환발의운동, 국민투표 운동을 하느라 거리시위가 벌어졌습니다.
- 정당이나 정치인의 잘못에 대한 심판은 선거 또는 탄핵제도(대통령의 경우)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국민소환제 도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헌법의 연혁

- 우리 헌법에 국민소환제가 규정된 적은 없음

주요 외국 헌법

- 미국 연방헌법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캘리포니아 · 노스다코타 등 일부 주에서 채택하고 있음.
- 대부분의 경우 국민소환제에 대한 규정이 없고, 대만,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에서만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있음.

CHAPTER

06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조정

01 국무총리의 선임방법

국무총리 선임방법?

- 개헌과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가장 합의가 어려운 쟁점은 정부형태 문제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도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이원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어느 유형을 선호하느냐를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정부형태의 문제란 결국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조정 문제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대 쟁점은 국무총리의 임명 방식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안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고, 2안은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1안은 현재 우리 헌법상의 총리 임명 방식이고, 2안은 이원집정부제의 총리임명 방식입니다.
-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각각 장 ·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전문가들 중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안. 총리 임명 – 국회 동의

국민이 선출한 정부수반이 행정권의 주도성을 가지는 것이 대통령제

- 대통령제는 행정권의 수반, 즉 행정권의 가장 으뜸이 되는 자리를 대통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형태에서 총리를 임명할 때에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본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 만일 행정권의 수반을 대통령으로 삼기로 결정하였다면, 즉 대통령제를 채택한다면, 행정권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할 것인지는 그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행정권의 2인자는 대통령이 주도하여 지명하고, 국회는 그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지는 것으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무엇보다 행정권은 다양한 정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책임성 있게 집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상의 명령과 책임 체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권만으로 국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예산안을 적절하게 의결해 주어야 하고 필요한 국가정책에 대하여 법률로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하므로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협력관계도 중요합니다.
- 만일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면 국회는 동의권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행정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정권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점을 고려하여 국회가 주도하여 총리를 선출하게 되면 총리는 대통령보다 국회에 대한 책임이 중하게 되고, 나아가 국회의 세력을 배경으로 대통령과 대등하거나 혹은 더 강한 지위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곧 행정권의 주도성이 대통령에서 총리로 전이되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국민이 직접 뽑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 다수파의 지지를 받는 총리에게 주도권을 넘겨야 하는 위험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명확한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으로 분권정신에 부합

- 또한 대통령에게 총리임명에 관한 주도권을 주는 중요한 이유는 국가권력을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나누어서 서로 견제함으로써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게 되면 입법권과 행정권이 융합하여 총리독재나 집권당독재가 나타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특히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총리를 국민이 아닌 특정 정당이 임의로 선출함으로써 교체할 수도 있다는 점도 국민의 행정부수반 선택권과 비교하면 맞지 않은 부분입니다. 국민의 신뢰가 낮은 정당이나 국회가 행정권을 좌지우지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총리와 대통령의 당적이 다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권이 예견가능하고 안정되게 행사되기 보다는 정파적 분쟁으로 마비되기 쉽습니다. 우리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행정권의 수반을 국민이 직접 뽑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체제를 국민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대통령제를 채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수반 선택권 실질화를 통해 국민주권 강화

- 총리를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임명하면 총리는 대통령의 바람막이에 불과할 수 있고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게 되면 대통령이 얼굴마담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두 가지 중 어떤 위험을 더 회피하고자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권이 작동되게 하려면, 비록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총리를 임명하더라도 총리임명은 어디까지나 대통령 주도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안. 총리 임명 – 국회 선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공유를 통한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 2안은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국회가 총리 선출권을 갖고 있는 형태죠.
- 대한민국은 헌법에 3권 분립 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해있습니다. 입법·행정·사법 셋으로 나뉜 국가권력은 서로 간에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시키며 국가권력이 집중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3권 분립 원칙을 극단화하면 국회와 행정부는 구성이나 존립, 활동에 있어서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 국정운영은 국회와 행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가 서로 고립되거나 사사건건 대립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국정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행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법률을 국회가 제정해 주지 않으면 행정부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죠.
- 또한 국회가 정한 법률도 행정부가 잘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달성이 어렵습니다. 3권 분립의 원칙이 입헌정부의 특징으로 이야기되곤 한지만 극단적인 권력분립 제도로는 국가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제화의 우려가 거의 없는 오늘날의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오히려 권력의 통합·강화가 더 필요합니다.

협의를 통한 정책결정을 제도화

- 특히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의 다수관계가 정부의 구성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부와 국회의 안정적 협조관계와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여당이 국회에서 다수라면 국회와 집행기관이 국정수행을 위해 협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여당이 소수인 경우라면 국정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럴 경우에 여당은 다른 정당과 정책적인 연대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하거나 의회 내에서 사실상의 정책적인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장애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여당이 국회 내에서 절대다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가위기상황의 극복이나 헌법 개정 등을 위해서는 재적

2/3이상의 협조관계를 확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 이런 협력관계를 위해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국무총리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일회적 협력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이는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협상과 합의에 의한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다수-국회다수와 정부의 구성을 일치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해외 사례에서 확인된 긍정적 효과

- 해외 입법례를 살펴볼까요? 의회에 총리 선출권을 둔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과 일본, 핀란드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헌법 제 63조를 통해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에 의하여 토론을 거치지 않고 선출된다. 연방의회 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선출된 자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헌법 제67조에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결로 지명한다.'고 밝히고 있고, 핀란드의 경우에는 헌법 제61조로 '국무총리는 의회가 선출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 해외 사례들에 비춰 국회가 국무총리 선출권을 가졌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볼까요?
- 첫째, 행정부와 국회의 공조관계로 정부의 안정과 효율적인 국정수행이 가능합니다.
- 둘째,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은 야당이 행사하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 셋째, 국무총리의 장관추천권이 실질화 될 수 있습니다.
- 넷째,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국무총리의 부서제도가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 다섯째, 행정부 내의 권력분립으로 권력남용을 줄이고, 국무총리와 대통령간의 협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촉진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국무총리 임명 또는 선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 대통령 임기에 대한 입장

※ 현행 5년 단임제 유지

- 현행 헌법상의 단임제와 중임금지 조항은 과거 우리 헌정사의 경험에 비추어 장기독재에 대한 반성으로 1980년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된 것입니다.
- 중임을 허용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단임제의 장점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미국의 경우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의 후반 4년은 전반 4년에 비하여 성공적인 기간이 아님을 고려할 때 중임 허용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의견입니다.

※ 4년 중임제로 변경

-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에 비하여 안정적이고 레임덕을 줄이며 책임민주주의를 고양할 수 있다는 점에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요논거로 제기되는 관권선거 등 선거부정의 위험은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대통령의 중임제한 여부의 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우리국민들의 성숙된 민주역량과 표현의 자유의 신장에 따라 여론을 통한 비판·감시 기능이 강화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중임제가 실시된다 하여도 대통령의 일방적인 독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원집정부제가 도입될 경우 대통령이 외치 분야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4년 중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헌법의 연혁

- 우리나라는 1960년 제3차 및 제4차 개헌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것을 제외하면 제헌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계속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왔음.

주요 외국 헌법

- 미국 연방헌법은 대통령제로서 부통령을 두고 있음.
- 독일·일본·프랑스·오스트리아·핀란드 등은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정부제로서 부통령은 없고 수상(총리)을 두고 있음.
- 스위스헌법은 회의제 정부형태로서 연방의회에서 대통령 및 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CHAPTER

부록1

헌법 조문

대한민국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 폭행 · 협박 ·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 ·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 초병 · 초소 · 유독음식물공급 · 포로 · 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국무총리 ·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 영토의 보전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 국방 ·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 · 외환 · 천재 ·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 ·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 ·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 ·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 · 국민투표안 · 조약안 ·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 · 결산 ·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 · 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 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 · 합동참모의장 · 각군참모총장 · 국립대학교총장 ·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 ·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 ·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 ·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 · 직무범위 · 감사위원의 자격 · 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 ·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 초소 · 유독음식물공급 · 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 ·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 · 권한 ·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 수산자원 ·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농 · 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 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 · 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 ·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 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 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CHAPTER

부록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약칭: 주민소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 청구요건 ·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주민소환투표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②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조(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발의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거주자 중 주민소환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 확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의 절차,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37조 내지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공직선거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개시일 다음날까지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 · 계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투표권자가 주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 하에 문서 · 도화 · 시설물 · 신문 · 방송 등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 참여 · 투표방법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 ·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 · 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 · 시 · 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3. 지역선거구시 · 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 · 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 · 시 · 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원"이라 한다)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 · 군 · 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시 · 군 · 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 · 군 · 자치구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 · 도의원과 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 · 면 · 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읍 · 면 · 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 · 면 · 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제9조(서명요청 활동)

①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사용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소환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환청구인서명부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소환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①소환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라 한다)는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7.21., 2012.1.26.〉

1.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4호를 제외한다).
5.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해당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한다), 입후보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③소환청구인대표자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검인되지 아니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을 수 없다.

④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

[시행일 : 2019.1.1.] 제10조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補正)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이내에 청구한 경우
3.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이하 "소환청구서"라 한다)와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2조(주민소환투표의 발의)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이하 "주민소환투표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

①주민소환투표일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 또는 선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2.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 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다)
3.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제14조(소명기회의 보장)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요청을 받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소명자료를 포함한다)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서 또는 소명요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요지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소환투표의 형식)

①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동일 관할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그 대상자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제17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이 법에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

제18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주민소환투표운동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경우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25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해당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 · 제63조(선거운동기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 제69조 · 제79조 · 제82조(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 · 제82조의4 및 제82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으로,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로, "소속정당의 정강 ·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 및 "소속정당의 정강 · 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 · 정견 · 활동상황"은 각각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

제20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 · 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 배부, 「공직선거법」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말한다)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2. 「공직선거법」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4. 「공직선거법」 제10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 · 대담을 하는 행위
5.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6. 주민소환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③지위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금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본다.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제21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①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 ·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방의회의원은 그 정지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할 수는 있다.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을 말한다) 및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지방의회의원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 한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부의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주민소환투표의 효력)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24조(주민소환투표소송 등)

①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 · 도의원, 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원 또는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 · 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지역구시 · 도의원, 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원 또는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시 · 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219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보궐선거 실시제한 등)

①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된 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궐선거 및 재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195조 내지 제201조를 준용한다.

제26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①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주민소환투표의 준비 · 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2.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토론회 등의 개최 및 불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된 경비
4. 주민소환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5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경비의 산출기준 · 납부절차 · 납부방법 · 집행 · 회계 및 반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제27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①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 제4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8항을 제외한다),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관리기관"은 "주민소환투표관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주민투표"는 "주민소환투표"로, "주민투표사무"는 "주민소환투표사무"로,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청구인대표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 "주민투표청구"는 "주민소환투표청구"로, "주민투표청구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주민투표안"은 "주민소환투표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보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중 "제9조제2항"은 "제7조"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는 "시 · 도지사"로, "자치구 · 시 또는 군"은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 · 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원"으로, 같은 법 제2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본다.

②「주민투표법」 제19조를 준용함에 있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지인 시 · 군 · 구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자의 예에 의하며,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 · 물품 · 거마(車馬) ·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 · 사회단체 · 종교단체 · 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 · 부녀단체 · 노인단체 · 재향군인단체 · 씨족단체 그 밖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금전 ·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 · 동창회 · 친목회 · 향우회 · 계모임 그 밖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 물품 · 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 · 권유 · 요구 또는 알선한 자
5. 주민소환투표인에 대하여 폭행 · 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 · 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6.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소환투표함을 열거나 그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 안의 주민소환투표지를 제거 · 파괴 · 훼손 · 은닉 또는 탈취한 자
7.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8.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주민소환투표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
9.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자

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를 하거나 주민소환투표를 하려고 한 자
3. 허위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4.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활동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 · 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제31조(벌칙)

①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0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3.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제33조(벌칙)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를 설치한 자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
4.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34조(이익의 몰수)

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①「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 학교·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3.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주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오손한 자
4. 삭제 <2010.1.25.>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주민소환투표사무원·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한 자
3.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자

4.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주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주민소환투표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서명요청 활동기간 개시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까지 해당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을 둔다.

②시 ·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중에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시단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제2항 전단 · 제5항 내지 제8항 및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선거부정감시사무"는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사무"로 본다.

④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 중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로 한다.

㉕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